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. 6. 16 선고 2021가단11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6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2. 11. 30. 접수 제9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박기범

별지